

#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

(의안번호 제800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3. 18      고 성 군 수  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3. 19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3. 3. 26     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제정사유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(2002.1.14 공포)에 의거 수계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한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특별회계의 세입을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, 용자금, 지방양여금, 공공 자금관리기금용자금 및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함(안 제3조)  
나.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민지원사업, 수질개선사업,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·유지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(안 제4조)  
다.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함(안 제7조)  
라.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건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수계지역에 포함되는 우리군 관내 해당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수계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
- 모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·군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그 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- 다만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할 것이라고 하였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우리 지역에서 낙동강 수계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인지?
- 답 : 우리군에서 낙동강 수계에 해당되는 지역으로는 대가면 일부 지역과 영현면, 영오면, 개천면 지역이 해당됨.
- 문 :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수 없다고 하였는데 별도의 승인을 받아 전용할수 있도록 하면 어떨는지?
- 답 :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용도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것임.

#### 6. 토 론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

- 2003. 3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